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**

**2. 제출 및 회부일자**

- 제출일자 : 2000년 10월 17일
-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9일

**3. 제안이유**

-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건축분쟁조정 효력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**4. 주요골자**

-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
  - 충청북도건축위원회 기능 관련조문 정비(안 제5조제2호)
    - 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안의 심의 → 삭제
- 관련 서식 정비(안 별지 제7호 서식)
  -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분쟁조정서 참고란  
“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효력을 가진다”를  
→ “본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 
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”

**5. 검토의견**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